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

- ▶ 일 시: 2018년 4월 4일 수요일 13시 30분
- ▶ 장 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발표자: 김광민 변호사(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발표자

김 광 민 변호사



(전) 법무법인 지식 소속변호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인천가정법원(청소년사건)화해권고위원

부천시 여성의 전화 자문변호사

한국노총 김포, 부천, 시흥지부 자문변호사

민주노총 부천, 김포지부 일반노조 자문변호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위원

저서

헌법 쉽게 읽기(2017, 인물과사상)

학력

홍익대학교(화학공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제학)

성공회대학교(NGO 석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

김 광 민 변호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1. 서론

‘소년’ 또는 ‘청소년’은 생물학적인 특정 연령의 인구집단을 뜻하는 용어다.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법률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 기본법), 17세 이하(공연법, 아동복지법), 18세 이하(민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선거법) 등 다소 무질서하게 규정하고 있다.¹⁾

개별 법률들이 청소년의 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은 가급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복지지원이 수반되어 국가예산이 필요한 ‘아동복지법’은 ‘청소년 기본법’ 수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들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존재 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국가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청소년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한다.

반면 ‘민법’, ‘소년법’, ‘선거법’은 ‘청소년 기본법’ 등과 목적 및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의 일부를 제한(민법, 선거법)하거나 대상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절차, 특히 형사사법절차의 특별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소년법). 이러한 맥락에서 청춘을 노년과 분리하기 위한 사실상 권력적 문제로 바라보는, 즉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분배해주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단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²⁾ 청춘 또는 청소년을 단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청소년’에는 ‘장년’, ‘중년’, ‘노년’ 등 생물학적 연령대 인구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과는 다른 권력적 작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청소년은 자칫 하나의 권리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심각한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성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렇듯 청소년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과 동시에 권리의 제한과 보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나 선거법에 따른 선거연령 등은 청소년을 직접 정의하지는 않으나 편의상 청소년의 구분개념으로 판단하였다.

2) Pierre Bourdieu. 1984. 『Questions de Sociologie』. 신미경 역. 158

장이라는 경계선에서 위치 지어진 불안한 인격체이기도 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제36조 제1항)이 신설된 것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권리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된 그러나 엄연히 인격체인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일 것이다.

청소년 범죄 또한 이와 같은 청소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만 비로소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범죄 및 소년법의 이해

청소년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성인과 구별되는 점, 즉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오랜 기간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기반해 성인과 구별 가능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근거에 기반 했지만 결정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연구는 쉽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한 층 더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이 성인과 구분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뇌과학에 따른 청소년기의 특성을 기반으로 소년범죄 및 소년법의 살펴보고자 한다.

뇌과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이 뇌의 전체적인 모습은 성인의 뇌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용량은 성인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뇌는 아동을 거치면서 구조적, 기능적, 조직화 모두에서 극적인 변화를 거친다. 뇌 전체의 크기는 6세가 되면 성인 뇌의 90%에 이르지만, 계속적으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한다.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DL-PFL)은 인지조절기능을 건드리는 과제들에서 중요한 피질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동들에 대한 조직학적, 신경해부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전전두엽 피질이 청소년기 중,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성인과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뇌가 발달하는 동안 많은 자극을 받지 못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뉴런이나 연결은 사라지며, 결과적으로 뇌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한다. 포

유류의 신경계 발달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뉴런의 초기 증식 및 그 연결과 그 이후에 수반되는 가지치기 과정이다. 인간의 대뇌피질이 발달하는 동안 가지치기는 뉴런들 간 연결수가 감소하는 시냅스 제거(elimination of synapses)에 의해서 발생한다. 사람에 있어서 시냅스 제거가 발생하는 시기는 피질영역에 따라서 다른데 시각피질의 경우 10세까지만 일어나지만, 전두엽 피질에서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 뇌의 발달 연구의 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아동기와 사춘기의 언어 발달, 집행기능, 사회적 인지의 발달에 관한 한 가지 공통된 발견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인지기능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피질영역들이 사춘기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연된 발달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춘기 후반이 될 때까지도 성인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집행기능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새로운 첨단장비인 뇌 MRI를 사용하여 행한 연구로서 미국 국립 정신보건원의 Jay Giedd 박사 연구팀은 뇌의 신경학적인 발달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1800명의 어린이와 10대 소년들의 뇌를 종단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13년 동안 MRI를 찍었다. 그 결과 소년들의 뇌가 발달과정을 거쳐서 점차 성숙되고 있음을 추적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동안 뇌의 전두엽(frontal lobes)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두엽이 발달과정 중 성숙에 도달하는 가장 마지막 부위라는 것을 밝혔으며, 소년 시기의 전두엽의 발달과정은 인지기능이 일어나는 뇌 부위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뇌의 성숙과정은 소년기의 전두엽 크기는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구성적 측면에서도 눈에 띄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도 있었다. Elizabeth R. Sowell 연구팀에 의하면 소년기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회백질(gray matter)이 얇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Reiss 연구팀의 15세-17세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전두엽의 전부 부위에 있는 회백질이 나이에 따라 신경섬유의 수초형성 작업이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Giedd 연구팀의 종단적 MRI 연구도 10대에서 적어도 22세까지 계속해서 회백질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의 뇌가 미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주로 전두엽 영역의 미성숙과 발달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 전전두엽은 전두엽의 가장 앞쪽 부분으로서, 영장류에서 그 크기가 크다. 전전두엽은 어느 단일 감각계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 모든 감각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역들보

다 훨씬 많은 수상돌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전두엽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전전두엽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전전두엽은 감각, 기억, 정서와 운동을 담당하는 다른 피질 영역들에 편향된 신호를 보내며, 이 신호는 정보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경로로 가도록 한다. 전전두엽은 작업 기억에 정보를 파지하는 것, 작업 기억 내의 정보를 선택하고 조작하는 것, 다양한 하위 목표들과 과정들 가운데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기능들에 관여한다. 즉, 기능면에서 뇌의 전전두엽은 최근의 자극과 사건들을 기억하는 능력인 작업기억 능력에 중요하며, 맥락에 맞게 행동을 수정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동기부여를 줘서 주의집중을 하게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심을 하는 등의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주관하며, 인간성과 도덕성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 발달과정 속 소년기의 전두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기에서의 신경심리학적 결함은 자기통제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들이 전두엽 영역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하여 위험한 행동, 더 나아가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달 뇌과학과 소년사법분야의 유명한 학자인 Elizabeth A. Scott와 Laurence Steinberg교수는 소년사법에 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정상적인 청소년의 전두엽에서의 구조적인 미성숙은 그들의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를 포함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것과 같은 관련성 있는 결함(relative deficiency)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뇌의 보상회로와 호르몬생산에서의 사춘기와 관련된 변화(puberty-linked changes)는 새로운 것을 찾고 위험 그 자체보다는 위험한 행동의 보상에 가치를 두는 경향을 가지게 한다. 셋째,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전두피질과 영역 사이의 신경망 연결의 상대적 취약점은 그들의 취약한 충동억제와 정서조절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정서적 자극이나 사회적 정보와 관련된 뇌의 영역과 사춘기 이후 빠르게 성숙되어가는 반면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청소년기의 후반이나 이른 성년기에서 이르러서야 성숙되기 때문에 공감하거나 통제하는 완전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위험한 행동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성숙도 갭(maturity gap)’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10대 뇌의 정상적인 속성은 ‘나쁜 선택을 하도록 지시(prescription for

bad choices)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다른 속성들보다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10대 소년의 뇌의 정상적인 특징은 범죄행위 등의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년의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라 소년의 뇌 발달의 미성숙함에 대한 특징들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소년 범죄자에 대한 완화된 형사정책적 대응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Scott와 Steinberg 교수는 기존의 소년사법체제도 이러한 완화이론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cott와 Steinberg의 이론은 소년사법에서의 뇌과학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학자들이나 옹호자들에 의해서 적극 지지되었다.

범죄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내지 사회학적 원인에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지만, 뇌과학자들은 최근 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초기의 범죄학자들이 언급했던 생물학적 근거에 따라 범죄원인론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말한다. 상당수의 뇌과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질병으로서 범죄, 범죄의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of crime), 폭력에의 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violence)을 언급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이상 항변을 가능하게 하며 그 정신질환이 뇌의 손상이나 기능장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책임 조각내지 책임 감경을 인정할 수 있다. 성인의 뇌와 구별될 수 있는 뇌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한 방어기제를 활용함으로써 배심원으로 하여금 해당 소년에게 사실관계와 기소 내용에 비추어 형사책임의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만들고, 그들의 방어는 인지적 뇌 기능과 관련해서 전문가 증언이나 뇌영상 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하게 하면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의 항변을 통해서 소년의 경우 반드시 자신이 무능력자이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도 책임능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뇌영상 자료에 의하면 소년의 뇌가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았다는 강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뇌의 성숙의 과정은 성인 연령인 18세를 넘어서도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을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드는 충동억제, 판단능력, 미래에 대한 계획, 결과에 대한 통찰 그리고 다른 특성들을 관련되는 전두엽 등의 뇌영역의 발달과

관련해서 20대 초반까지 뇌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형사미성년자의 최저연령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며, 성인이 되는 연령을 현행 19세보다는 뇌의 성숙도에 맞추어서 21살이나 22살로 정하는 것이 성숙의 생물학적, 과학적 기준의 연령에 더 가깝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즉, 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인지기능에서, 성숙한 판단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동을 통제하고 행위의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동료의 영향력을 참아내고, 또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신경과학의 뇌 영상이미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형사책임 판단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따르지만 정리하면 뇌과학에 따른 청소년 어떠한 행동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특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사안의 중대성 및 결과예측의 어려움

자신이 저지른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소년범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은 법리적 측면(형벌의 경중), 피해의 정도(교감)를 뜻하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이 향후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부천지원 2016. 7. 8.선고 2016고합29 사건은 6명의 남성(피고인은 7명)이 한 명의 여성을 윤간한 매우 끔찍한 사건이었다. 범인들은 술에 취해 심실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고시원 방에서 강간하였다. 강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범인들은 고시원 다용도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주'는 다른 공범 중 한 명인 '정○수'와 함께 해장국을 먹기 위해 그의 범행을 기다렸을 뿐 범행에 동참할 목적으로 다용도실에서 대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주'가 다용도실에서 대기한 것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범행에 동참하기 위함으로 판단하였다.

3) 이인영. 2015. 「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권3호, 437~441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상엽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이 주는 '고추밭' 주점에서 부킹할 여자를 찾던 중 우연히 자신의 동창과 그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김 수, 정 수와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이 주, 김 수, 정 수는 피해자 일행과 '칠성포차'로 자리를 옮긴 뒤 그곳에서 피고인 김 현, 이 수, 정 주와 합석하였다.

③ 피고인 김 현 등과 피해자가 '칠성포차'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이 주는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본 피고인 김 수가 오늘 '저 애 따먹는다'는 이



2016-0074687675-79B0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15 / 21



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④ 그 후 피고인 이 주는 친구를 만나러 '고추밭' 주점으로 다시 갔는데, 그 사이 피고인 김 현, 김 수, 이 수, 정 주, 정 수는 피고인 김 수의 주거지인 아이타운으로 향했다.

⑤ 피고인 김 현 등의 무리와 헤어진 피고인 이 주는 약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 정 주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고인 정 수의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아이타운 304호에서 친구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정 수와 아이타운 근처 중동 포비스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⑥ 피고인 이 주는 피고인 정 수와 만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피고인 정 수에게 '너도 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이 주, 정 수는 함께 아이타운으로 갔다.

⑦ 피고인 이 주는 3층 다용도실에서 피고인 김 현, 김 수, 정 주 등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정 수가 304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정 수를 기다리다가 먼저 아이타운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⑧ 증인 정 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주가 아이타운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이 주와 강간 범행이 끝난 뒤 같이 집에 가려고 해서 아이타운으로 같이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 주도 수사기관에서 '끝나고 피고인 정 수와 함께 아침밥을 먹기로 하여 같이 아이타운으로 갔으나, 피고인 정 수가 방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이 주는 '칠성포차' 앞에서 피고인 김 수 등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2016-0074687675-79B0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16 / 21



이 있을 뿐, 그 후 바로 피고인 김 ○수 무리와 헤어졌고,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 정 ○수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정 ○수를 만나 아이타운으로 온 뒤 다용도실에 머물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주가 '칠성포차' 앞에서 피고인 김 ○수 등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이 ○주는 다른 피고인들의 강간 범행 당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고, 아이타운으로 온 다음에도 범행현장인 304호가 아닌 다용도실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간 점에 비추어, 강간 범행의 합동범으로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이 ○주가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이 ○주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김 ○현, 이 ○엽, 이 ○주는 판시 『2016고합29』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김 ○현에 대하여는 특정범



2016-0074687675-79B0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17 / 21

다행히 ‘이○주’는 단순히 범인 중 한 명과 해장국을 먹기 위해 다용도실에서 대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준강간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럼에도 ‘이○주’는 변호인과 처음 상담 시 “범행 현장 옆에 있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묻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 심지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여겼고, 설사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그저 몇 년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6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윤간한 끔찍한 사건현장 옆에서 태연히 범행이 끝나길 기다렸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주’는 싸이코패스도 흉악범도 아니었다. 단지 절도 등 전과 3범의 잡범이었다. ‘이○주’에게 끔찍한 윤간 사건 옆에서 기다린 행위는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절도보다도 하찮은 범행이었던 것이다.

대 상 자 검 색 결 과

성 명 : 이○주
주민번호 : 970-1-1-3-1-1
성 별 : 남자
관할관서 : 천재

일반사건(탐문정보 제외)

구분	담당관서	대상자구분	대상자분류	신 분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단서
구분	담당부서	성명(성별)	영문명		입건일자	사건번호	사건과명(입건/송치)
	담당자	주민번호	국적		종결일자	처리상태	송치의견
1	경기부천소사경찰서	피의자	국내인		2013-05-08	2013-	피해자신고
	강력2팀	이○주(남자)			2013-05-15	2013-	절도 / 특수절도
	윤성은	97-1-1-3-1-1			2013-08-02	송치종결	기소(불구속)
2	경기부천소사경찰서	피의자	국내인		2013-06-07	2013-	피해자신고
	강력4팀	이○주(남자)			2013-06-13	2013-	특수절도 / 특수절도
	김성환	970-1-1-1-1-1			2013-08-29	송치종결	기소(불구속)
3	경기부천소사경찰서	피의자	국내인		2014-04-09	2014-	타인신고
	아동청소년계	이○주(남자)			2014-04-15	2014-	점유이탈물횡령 / 점유이탈물횡령
	유기원	970-1-1-1-1-1			2014-04-18	송치종결	기소(불구속)

부천지원 2017. 4. 28.선고 2017고합18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패하자인 동석한 여성이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어려워하자 술을 대신 마셔주는 이른바 ‘흑기사’를 자청했다. 피고인은 흑기사로 술을 대신 마신 후 보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넘겼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과음으로 인해 심실상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흑기사의 보상으로 요구한 성관계를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여기고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성관계 요구에 웃음을 지은 피해자의 태도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은 “흑기사 요구에 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저는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침대에 누운 것으로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만취로 인해 심실상태에 빠져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횡설수설 정도의 대화나 호느적거리는 몸짓 정도는 하기 때문에 간혹 심실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혼동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취한 여성과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4. 죄명 및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경위

○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가 우리서 여청수사팀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경기 남부청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진술을 청취하였다.

○ 피해자 한 |원

- 피해자는 친구인 이 |와 함께 놀고 있는데, 피의자 |수에게 전화가 와서, 강현수를 만나서, 이 |의 방안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 술마시기 게임을 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는 일명 '흑기사'를 자칭하면서, 그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 잠이 들었다고 한다.

-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하였는데, 피의자와 참고인 등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하여 주었고, 집에 팬티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알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 피해자는 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의자 |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네선배로, 참고인 이 |의 집에서 |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고, 그런 틈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

○ 피해자녹취록,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으로 보아 범죄의 개연성 높다고 판단되므로 인지하였다.

나. 충동성

충동성은 소년범의 또 다른 특성이다. 소년범죄 중 상당한 부분은 다분히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2476 사건은 다분히 충동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매우 크게 확대된 경우다. 피고인들은 총 6명으로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 이동 중 노상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차로 길이 막혀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은 상담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이유를 “저희가 6명이었고 피해자는 혼자 였어요.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겁을 주면 도망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쪽이 같이 욕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위력으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대응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유○덕’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757에 있는 파리바게트 건물 주차장 입구 인도에서, 피고인 장 우의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최 현의 아우디 승용차에 나눠 타 인도를 가로막고 정차하고 있다가, 마침 회식을 마치고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김 욱(34세)이 피고인들에게 차를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모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둘러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다가 행인들이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인 경기 부천시 소사로 751 소재 '삼겹싸롱'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장 우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지자 피고인 임 환, 피고인 김 욱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장 우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유 덕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정 빈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얻어맞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갔으나, 피고인 장 우, 피고인 유 덕, 피고인 임 환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경기 부천시 소사로 747번길 14에 있는 청과물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유 덕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리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피고인 장 우도 달려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피고인 임 환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다 근처에 있는 '나주곰탕' 식당 앞 노상에서 스스로 넘어지자 피고인 장 우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하고, 피고인 유 덕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가격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모두 도주하였다.

충동성 범죄의 또 다른 사례로는 인천가정법원 2018. 2. 6. 결정 2017푸4120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보호소년 ‘김○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의 손을 거쳐 십대 후반 동생과 함께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 ‘박○미’는 남자친구 ‘박○용’과 동거 중이었는데, ‘박○용’이 거실에서 ‘김○진’을 꾸짖자 부엌으로 달려가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당시 ‘김○진’은 부엌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박○용’과 동생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내려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되어 기소된 사건이다.

‘김○진’이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기는 하였으나 거실로 나오지는 않은 점, ‘박○용’과 동생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내려놓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칼을 집어든 것은 다분히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1.0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벌금100만원
1998.08.26. 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2년,징역8월
절도		
2017.06.16. 폭행	인천지방검찰청	공소권없음

3. 범죄사실

1) 피의자 김 진의 특수협박

피의자는 2017. 10. 8. 2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까치말로16번길 2 진성베스트빌 1동 301호 내에서 어머니 박 미(40세,여)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박 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박 용(37세)이 피의자를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파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2) 피의자 박 용의 폭행

피의자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김 진(18세)과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60조 제1항

5. 증거관계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압수물

다. 소결

청소년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신적·육체적 성장기에 있는 그들은 처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나간다. 청소년을 어떠한 특징으로 정의하는 순간 특정 인 또는 특정 집단의 특정한 모습에 전체 청소년을 가두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을 소년사범이라는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축소시킨다고 해도 특정화가 수월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범죤요인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그들을 몇몇 요소에 가두어 왜곡시키는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클 수도 있다.

다만 상기에서는 청소년 법률지원 활동을 하며 얻은 필자의 경험을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일정 수준의 객관성이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뇌과학의 견해를 차용하여 살펴보는 수준에서 소년사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3. 소년 재범의 원인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강릉 10대 집단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일련의 소년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 소년 범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강력범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특히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흉악해졌다는 인식은 상당부분 왜곡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동시에 재범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기 때문이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상습범죄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소년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재범률은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누가 분석하든 난감한 부분일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크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범죄에 따른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 장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문

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가정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가정일 것이다. 가정은 청소년이 나고 자라는 곳으로 사회화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경험상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범죄에 연류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해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성장기의 대부분을 가정의 돌봄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속에 쉽게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인천가정법원 2017. 12. 19. 선고 2017푸2839 사건 ‘조○늘’은 가정결손이 비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조○늘’은 비행으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보호관찰법을 위반하고 특수절도를 범해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이루어진 사례다. ‘조○늘’이 범한 특수절도는 배달 상자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요구르트를 먹는 등 소위 잡범 수준이었다. 보호관찰법 위반 역시 맘껏 귀가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조○늘’은 4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손에 길러진 청소년이다. 이혼 후 어머니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아버지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만나는 수준이었다. 할머니는 손주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차 어긋나기 시작한 ‘조○늘’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조손가정에서 자란 ‘조○늘’은 기본적인 생활규칙을 지키는 것에조차 큰 어려움을 느꼈고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야간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보호관찰 처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절도 역시 요구르트를 훔쳐 먹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조○늘’은 가정을 통한 사회화에서 탈락하면서 반복된 재범에 이르게 된 전형적 사례다.

신청의 이유

보호관찰대상자 이 ○ 진(남, 16세)은 2017. 6. 13. 인천가정법원에서 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결정 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상습적인 새벽 귀가 등 일탈행동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여야 함’ 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새벽 2~3시 경 귀가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함

2. 보호관찰 기간 중 반복적인 동종재범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가. 특수절도

친구 조 ○ 늘(16세, 무직)과 2017. 8. 중순 새벽 2시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음식점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 6만 원을 절취하였고, 친구 조 ○ 늘(16세, 무직), 현 ○ 준(보호관찰 대상자), 윤 ○ 현(부천 심 ○ 고1), 김 ○ 민(16세, 무직)과 2017. 9. 초 새벽 2시 경 대상자의 거주지 아파트 상가 앞 배달 요구르트 상자를 훼손하여 상자 내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절취함

나. 특수절도 미수

친구 조 ○ 늘(16세, 무직)과 2017. 9. 4. 새벽 01시 경 부천시 춘의역 인근 음식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돌맹이로 훼손한 후 침입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약 40분 후,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식당을 발견 후,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려 침입하였으

상 호 명 : - 최종학교 변동(없음) : - 동거인정보 변동(없음)	
<지도감독> - 면담태도 : 양호 - 사회생활현황 : 고등학생 - 수사기관조사 또는 재판진행 중 사건 존재여부 : 없음 - 기타지도감독 : ○주거지로 초기출장을 실시하여 조모와 면담 - 주거지는 영세민 주공아파트 단지로 주변환경 보통	
○근황 및 특이사항 - 주거지에서 조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음 - 부모는 대상자 4세경 이혼하였음(친모 연락두절, 친부 간혹 연락) - 부모 이혼 후 현재까지 조모가 대상자를 어렵게 양육하였다며,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함 - 대상자 고모가 경제적으로 양호하다고 하여 대상자만 수급권자로 지정되었고 조모는 제외되었음 - 현재 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조모가 간혹 시간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 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며 결석과 지각이 많았음 - 다만, 최근에는 결석하지 않고 늦게라도 학교에 등교하고 있음 - 학교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23:00~24:00경 귀가함 -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대상자도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고 있음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등 재범방지를 위해 조모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보호관찰 초기(준수사항)교육지시 SMS통보 2017.06.24.(토)	내용 : 준수사항 교육 지시,일시:2017-06-29 17:00,장소:인천보호관찰소부천지소
보호관찰 초기(준수사항)교육지시 SMS통보 2017.06.26.(월)	내용 : 준수사항 교육 지시,일시:2017-06-29 17:00,장소:인천보호관찰소부천지소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의뢰 2017.06.27.(화)	내용 : 보호관찰참고자료용
범죄경력자료등조회 결과회신 2017.06.28.(수)	내용 : * 수사경력자료회신 - 2016-10-31, 특수절도, 인천부천지청, 기소유예 - 2017-01-31, 특수절도, 인천부천지청, 선도유예 - 2017-04-05, 절도, 인천부천지청, 소년보호사건

반면 인천가정법원 2016. 8. 24 선고 2016푸1503 사건 ‘손○민’은 ‘조○늘’과 상반되는 사례다. ‘손○민’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자라왔다. 아버지는 잦은 지방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시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손○민’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왔다. 과정에서 한두 번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처벌받은 회수만 10번이 넘을 정도로 반복적인 비행을 일삼게 되었다.

그러나 늦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형제들이 ‘손○민’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진정성을 느낀 ‘손○민’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손○민’이 저지른 비행은 대부분 공동공갈로 소위 깡패(뺑뜨기)였다. 뺑뜨기는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과의 관계만 정리하면 벗어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였다. ‘손○민’은 함께 비행을 저지르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이○나’와만 연락하고 지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 ‘이○나’가 혹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차되어있는 차의 문을 열어보는 행위를 할 때 옆에 있다 함께 기소된 후 ‘이○나’와의 연락도 끊고 현재는 직업훈련 학교에서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손○민’의 사례는 비록 가정에 의한 사회화 과정에서 탈락하여 비행행동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다시 가정을 통해 비행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본 비행명: 특수절도(미수)

○ 본 비행경위 및 동기

손 민은 2016년 5월 2일 03:55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80번길 50 경인고속도로 담벼락 노상에서 친구인 이한나가 망을 보고 있을 때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문짝 차량손잡이를 앞뒤로 잡아당기고 조금 열려진 창문을 강제로 내려 보는 등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이한나의 집에서 놀다가 '심심하고 뭐를 먹고 싶기도 한데 돈이 없어서 차량을 털자.'고 마음먹고 본 비행을 저질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 비행전력 등

손 민은 2012년 공갈 및 장물(에들에게 뺏아서 폰을 팔았다고 함)혐의로 1, 4, 5호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4년 같은 혐의(새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걸렸었던 혐의가 남아 있어 다시 처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보호관찰 위반일 것으로 생각됨)로 10호 처분을 받고 18개월 간 안양에 소재한 소년원(정심여자학교)에서 생활한 바 있다. 본인 스스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다고 하고 있고 본 비행 또한 수법을 상세히 알고 있고 '돈이 떨어졌을 때는 비행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압수비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음주, 흡연을 당연하듯 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관련 압수비행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 면담 및 검사 시 태도

손 민은 또래들보다 약간 큰 키에 보통보다 약간 통통한 체격으로 머리를 쏘듯형태로 다듬었으며 밝은 갈색으로 탈색한 상태였다(위생상태 양호). 면담실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왔으며 말을 하기 위하여 턱 밑으로 마스크를 내렸다(미세먼지 때문에 썼다고 이야기함). 개구진 표정을 보였으며 발랄하듯한 인상이었다. 목소리의 크기, 속도, 어조에 문제가 없었으며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였고 특히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상당히 솔직한 태도를 보였다. 면담에 협조적이었으며 수감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본 비행에 대해 책임은 지려고는 하고 있으나 '비행행위를 들켜서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다.

○ 가정환경 및 비행환경에 관한 소견

손 민은 17세로 현재 아버지, 두 살 위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으며 어릴 때라 어머니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학교 때 아버지와 갈등(자신의 친구들을 싫어하여)으로 인하여 수 차례 집을 나간 적이 있으며, 팽조직 등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머물 곳을 구하여 기거한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특히 많이 봐주어서' 가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오빠와의 사이가 각별하다고 한다.

2012년 문제행동 및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고 잦은 가출과 비행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여 속칭 폰팔이(이들 폰을 뺏은 후 팔아 넘김)를 많이 하여 결국 1, 3, 5호 처분을 받았고 이후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정심여자학교)에 18개월 간 수감된 바 있다. 그곳에서 직업훈련 등을 받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주로 공범인 이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거의 매일 이 .나의 집에 가서 놀다가 늦게 귀가) 허락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가출 생활의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나의 집안 사정으로 보호자가 부계하여 쉽게 음주, 흡연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환경적 위험성은 높은 편으로 사료된다. 다만 밤차 선생님의 권유(가출 기간 동안 밥을 얻어먹었던 밥자의 선생님이라 함)로 스스로 청소년인턴쉽 프로그램에 들어가 직업활동교육을 듣는 모습, 꾸준히 검정고시를 치르고 있는 모습 등으로 볼 때 이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수감자가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직
17세무직
17세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나. 학교

청소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중 가정을 제외한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은 학교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교육도 이루어졌다. 특히 친구들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사회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 더 나아가 학교폭력을 범죄화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의 기능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2001년 11월 임종석의원은 ‘학교폭력 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학교폭력을 일종의 분쟁으로 보고 이를 중재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계류되다 2003년 수정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으로 제정되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었으며 학교폭력 관련 정부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구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다.

정부 차원의 계획 및 대책은 지금까지 총 5번이 나왔다. 총 세 번의 ‘기본계획’(1차 : 2005~2009, 2차 : 2010~2014, 3차 : 2015~2019)이 나왔으며 중간에 특별히 2번의 대책(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2012.2.6. ,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 2014.3.4.)이 발표되었다. 2번의 대책 발표의 경우, 2012년은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대응이며, 2014년은 새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듯 학교폭력예방법은 발의된 후 십여 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대응을 처벌중심으로 바뀌어 놓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분을 하고 있다. 학폭위의 처분은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다양하지만 학폭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해결 능력도 얻지 못한 청소년들은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연류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타나듯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범죄에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된다.

4. 현 대응 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서 살펴보았듯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특성이 충동성이고 가정과 학교의 사회화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쉽게 범죄에 빠져든다면 청소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에서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교정기관이 이와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교정기관이 청소년의 사회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몇 가지 표면적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로부터 격리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소년교도소 또는 6호처분시설에 위탁되게 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대표적인 시설내처우에 해당한다. 시설내처우는 성장기의 청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6호시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 시설이다. 6호시설은 소년원에 비해 소규모로 사회내에 위치하며 직원들도 교정 보다는 사회복지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시설내처우의 경우에도 외부 단체와의 연계사업이 간혹 이루어지나 6호시설은 외부에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다양한 단체와 연계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내처우를 표방하는 6호시설 또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시설내처우에 가깝다. 위탁소년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부모 등 친인척과의 면담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인적자원이 결합된 사업이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회와의 연계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듯 소년범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다소 충동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소년범의 특성은 사회 내에서 사회의 규범을 익혀나가는 과정, 즉 사회화를 통한 교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 소년교도소와 같은 시설내처우 그리고 사회내처우로 분류되기는 하나 사실상 시설내처우와 유사한 6호시설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사회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설내 인권

우리나라의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과밀수용은 이미 만성적인 문제가 되었다. 대략 정원의 150% 정도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정원의 150%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소년사범의 교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설 내 인권문제다. 시설 내 인권문제는 과밀수용에 따른 통제의 효율성에서 기인한 부분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에 들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하나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서 교사들에 의한 욕설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때로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내처우로 분류되는 6호시설 역시 인권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설 곳곳,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보호소년들을 감시하는 경우가 흔하고 교사들에 의한 언어폭력과 빈도는 적으로 것으로 보이나 가혹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국가인권위원회는 6호시설 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1차 조사를 벌였으나 2018년 2차조사가 예정되어있다).

반복하여 지적하였듯 청소년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소년사범 간 괴리에서 발생하는 성향이 강하다. 때문에 소년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회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사범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서 사회질서의 습득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대안모색

소년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다양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방안 중 소년사범이 사회질서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내처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청소년에게 사회질서를 익히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지적하였듯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인 6호시설이 실질적으로 시설내처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6호시설이 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거론하자면 법원의 평가방식과 규모라고 생각한다. 6호시설은 법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탈률이 평가기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입소한 청소년 중 중간에 시설을 이탈(도망)하는 청소년이 많을수록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된다. 때문에 시설들은 청소년을 철저히 통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설내처우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6호시설의 사회내처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의 이탈문제에 신경을 쓰되 그것이 시설의 평가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더해 6호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인적유대관계를 통한 보호소년의 통제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범에 이르게 된 청소년 중 상당수가 토로하는 문제인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 역시 소년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소년재판도 무죄선고에 해당하는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통재판에 비해 증거조사가 제한적인 소년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이에 더해 범죄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복지·교육적 처분을 표방하는 소년재판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크다. 이처럼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처분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에 수긍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 사회질서에 대한 적응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비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소년법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통고제도 역시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도 불처분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고제는 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

인 쇄 2018년 4월 4일

발 행 2017년 4월 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 415-2114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